

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내용

1. 개정배경

- '02.5.2일 안성에서 구제역 발생직후부터 소독소홀, 신고지연 농가 등에 대한 법규상의 일부 미비점이 제기
 - 구제역,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 중에도 피해농가 지원, 이동통제 강화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(검역원)의 방역조치 권한 부여 등 다양한 법 개정 수요가 도출
- 추진경과
 - 5.2~31일 :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제도개선 Task Force 팀 구성, 전문가 회의 및 생산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 마련
 - 10.15일 : 정장선 의원 발의 개정안 제출
 - 11.1일 :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심의, 개정법률안 의결
 - 11.6일 :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, 개정법률안 의결
 - 11.12일 : 제234회 정기국회 심의, 개정 법률안 의결

2. 주요골자

- 농림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가축전염병

예방 및 조기발견·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, 정보수집 분석, 전문인력 육성 등 가축 질병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제3조).

- 가축방역에 관한 주요정책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 협의회를 설치함 (제4조).
-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하고 축산 관련단체 등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함 (제5조, 제6조).
-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(제8조).
-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(제9조).
-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(제13조 제3항).
-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(제16조).

-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·종축장·부화장·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하는 한편, 동물약품·사료·집유·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를 신설함 (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, 동조 제2항).
-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(제18조).
- 시·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람과 가축·차량의 이동제한·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(제19조 제1항).
- 발생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신설함 (제19조 제2항).
- 가축의 사체를 소각·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(제22조 제3항).
-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제49조).
-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검사·소독·이동제한·살처분·도태·시설사용정지 등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(제53조).
-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(제61조 제1항) **대수**

